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를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제7항 중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산업공급망정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제조정책과·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 전기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을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 전기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기업정책팀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6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제8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산업팀장”을 “기업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 · 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 · 업종별 · 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 · 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 분석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23>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
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
행

2.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 · 중간원료 · 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
의 수립 · 시행
3.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 분석
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
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 · 공급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
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
8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별표 3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
·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통계사무관· 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 전
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보건사무관· 사서사무관· 기상사무관· 사
회복지사무관·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수의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간호사무관·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공업연구관· 학예연구관· 편사연구관· 농업연구관· 임업
연구관· 해양수산연구관· 기상연구관· 보건연구관·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2”를 “78”로,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통계사무관· 환경
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보건사무관· 사서
사무관· 기상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수의
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간호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부감사관· 공업연구관· 학

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을 “27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을 “82”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를 “297”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을 “40”으로,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를 “47”로, 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9”를 “41”로,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을 “45”로, 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 (생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u>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u> ,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u>공업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u>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u> ----- ----- --- <u>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u>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 · 협조</u>	<삭 제>
5. <u>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 · 협조</u>	<삭 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8. ~ 13. (생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 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전기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 · 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 · 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 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전기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기업정책팀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
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5. (생략)

5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
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
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
책의 수립·시행

5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

5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업종
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
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
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

5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6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

⑧ -----
-----.

1. ~ 5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2. <u>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u>	<u><삭 제></u>
63. <u>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u>	<u><삭 제></u>
64. <u>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u>	<u><삭 제></u>
65. <u>중소·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u>	<u><삭 제></u>
66. <u>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u>	<u><삭 제></u>
67. <u>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지원</u>	<u><삭 제></u>
68. <u>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u>	<u><삭 제></u>
69. <u>사업재편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70. <u>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변경</u>	<u><삭 제></u>
71. <u>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u>	<u><삭 제></u>
72. <u>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u>	<u><삭 제></u>
73. <u>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u>	<u><삭 제></u>

탁에 관한 사항

7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75. (생략)

⑨ ~ ⑮ (생략)

<16>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14. · 15. (생략)

⑰ ~ ⑳ (생략)

<22>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기
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 · 중간원료 · 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 · 시

<삭제>

75. (현행과 같음)

⑨ ~ ⑮ (현행과 같음)

-----.

1. ~ 13. (현행과 같음)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
화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5. · 16. (현행 제14호 및 제15
호와 같음)

⑰ ~ ⑳ (현행과 같음)

<-- 기업정책팀장-----
-----.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
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
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
책의 수립 · 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

행

3.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등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 · 업종별 · 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 · 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 분석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사 · 분석

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 · 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 · 협회 · 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 · 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실시지침의 작성·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
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
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
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
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
·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
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
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
·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중간원료·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시
행

3.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등 에
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
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
사 · 분석

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23> (생 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
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
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
업 · 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
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
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
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 · 협회 · 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현행 제23항과 같음)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u>2.</u> ~ <u>13.</u> (생략)	<u>3.</u> ~ <u>14.</u> (현행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u>15.</u> ~ <u>28.</u> (생략)	<u>16.</u> ~ <u>29.</u> (현행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53	957	+4
일반직 계	942	946	+4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17	19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51	49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 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 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서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 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 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u>72</u> .	<u>78</u> .	+6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78</u> · ·	<u>276</u> · ·	-2
--	-------------------------------------	-------------------------------------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953</u>	• <u>957</u>	+4
•	•	•	
•	•	•	
일반직 계	<u>942</u>	<u>946</u>	+4
•	•	•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u>17</u>	<u>19</u>	+2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u>51</u>	<u>49</u>	-2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 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 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서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 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 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u>76</u> .	<u>82</u> .	+6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99</u> · ·	<u>297</u> · ·	-2
--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	<u>38</u>	<u>40</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 주사 · 환경주사 · 시설 주사 · 전산주사 · 방송 통신주사 · 방재안전주 사 · 공업연구사 · 환경 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 는 보건연구사	<u>49</u>	<u>47</u>	-2
·	·	·	

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 업서기 · 환경서기 · 시 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11</u>	<u>14</u>	+3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 기보 · 시설서기보 · 전 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 서기보	<u>10</u>	<u>7</u>	-3
·	·	·	
·	·	·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 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 산주사보	<u>7</u>	<u>8</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0</u>	-1
·	·	·	
·	·	·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		
·	·	·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u>2</u>	<u>4</u>		+2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 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u>	<u>1</u>		-2
·	·	·		
·	·	·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 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 보	<u>7</u>	<u>8</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전 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 기	<u>4</u>	<u>3</u>		-1
·	·	·		
·	·	·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	<u>39</u>	<u>41</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 주사 · 환경주사 · 시설 주사 · 전산주사 · 방송 통신주사 · 방재안전주 사 · 공업연구사 · 환경 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 는 보건연구사	<u>47</u>	<u>45</u>	-2
·	·	·	

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 업서기 · 환경서기 · 시 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11</u>	<u>14</u>	+3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 기보 · 시설서기보 · 전 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 서기보	<u>10</u>	<u>7</u>	-3
·	·	·	
·	·	·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 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 산주사보	<u>7</u>	<u>8</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0</u>	-1
·	·	·	
·	·	·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		
·	·	·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u>2</u>	<u>4</u>		+2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 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u>	<u>1</u>		-2
·	·	·		
·	·	·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 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 보	<u>7</u>	<u>8</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전 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 기	<u>4</u>	<u>3</u>		-1
·	·	·		
·	·	·		